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41
----------	-----

제출연월일 : 2012. 4. 12

제출자 : 함명섭 의원 외 5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2년 4월 26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활동기간

- 2012년 4월 26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장문혁 의원, 유인환 의원, 함명섭 의원, 박종욱 의원, 이정율 의원, 정문섭 의원

5. 운영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 고
2012. 4. 26 (목)	제1차 조례특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12.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